

『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11월 21일

나. 발 의 자 : 손홍섭, 권기만, 김성현, 김익수, 김정곤,
박세진, 박주연, 윤영철, 윤종호, 정하영(10인)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5일

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손홍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책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개인 및 법인·단체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사회공헌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 7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3조)
-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먼저,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,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책에 대하여, 안 제5조는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개인 및 법인·단체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사회공헌장 수여에 관한 규정을, 안 제6조는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, 안 제7조는 사회공헌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4조는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,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